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23
----------	-------

발의연월일 : 2020. 1. 16

발의자 : 함진규 · 金成泰 · 김성원

홍일표 · 김용태 · 이찬열

김선동 · 유동수 · 강석진

이은재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운영 등이 가능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 정비, 개량, 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의2호).
- 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전문가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절차·기준 등 제반 규정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항).
- 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건축 등을 포함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제46조 삭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정비·개량·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제2항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로 한다.

제3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의2,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 제2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u> <u>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u> <u>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정비·개량·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u>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u>1명</u> ,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u>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u> ,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2명</u> ----- -----. ③ ----- <u>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u> ----- ----- -----.
1. ~ 5. (생 략) ④ · ⑤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p>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u>⑦ (생략)</u> <p>제46조(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임대·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축·임대·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임대·운영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p>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의2,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 제2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삭제></u></p>
---	--